

##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

\*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상호(명 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사업장 소재지)	(전화번호: )	
해당생물 명세	보통명	학명	
	원산지(표본)	생산지(제품)	
	협약 적용시점	해당 부속서 [ ] I급 [ ] II급 [ ] III급	
	입수시기		
	획득한 지역		
	용도		
	입수 경위		
명세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  
(지방환경청장)

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·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·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